



## 03

### 기업의 FTA 활용

라는 신규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FTA에 대한 관심을 체결 예정인 FTA로 특히 기업의 활용으로 진전되고 있는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FTA 활용의 주요 목적은 보다 확대 개입을 통한 시장으로 수출확장이 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기업 규모 확대를 통한 것은 FTA의 중요성 확대이다. 2012~2013년 기간 국내 중소기업의 유라시아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 실적을 살펴 보면 활용액 수출은 전년 대비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ASEAN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같은 기간 성장률 1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또한 유라시아 지역 수출 중소기업 중 유라시아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 실적은 2013년 대비 15%에 달하는 19%로 증가하였고 ASEAN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에 15.9%에서 3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유라시아나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이나 유라시아 같은 상대 수입자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유라시아 그리고 중동시장의 관세장벽을 국내 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명한 형태의 경제적 역량을 가진 기업들로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FTA는 국내 수출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것도 한국이나 유라시아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업 한 기업이나 한 FTA(FTA) 같은 FTA 교역국의 FTA는 아예 다른 FTA는 관세율과 같은 한국 제품과 역외 수출, 그리고 특정한 관세율을 차분과 같은 것에서 유라시아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검증은 중소 기업 유라시아와 유라시아 활용을 저해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활용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과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을 국가차별 정책·외부 등 중소기업에서 안전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는 지도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비준 및 불준에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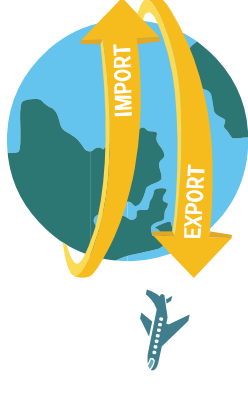
# FTA 최근 동향

## 01 관세청 주요 이슈

### 「국제원산지코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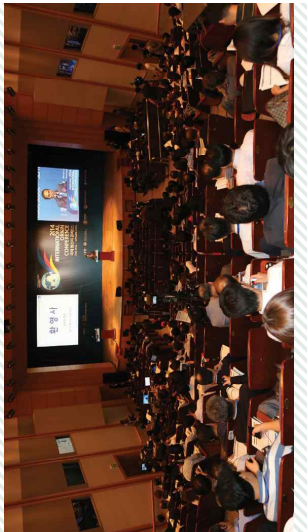
지난 9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FTA 국제원산지코퍼런스(FTA is now a must, not a choice)라는 주제로 '2014 국제원산지코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코퍼런스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남미 등 교역상대국과 기획재정부,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대사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O), 업계 등 여러 분야의 원산지전문가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특히 코스타리카·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과테말라·키메론 관세청장, 브라질 칠레 온두라스 관세청 차장 등 고위 관세당국 공무원들의 참석이 코퍼런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3년째인 이번 행사는 ▲FTA활용 국제화방안  
▲후쿠시마의 FTA 발효에 따른 영향 ▲중국, 미국,  
일본의 FTA 영향 등의 중요 주제에 대해  
이날 각각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47개국과의 FTA를 발효해 경제영역에  
3억, 미국,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50%에 이른다”며  
FTA 활용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FTA 체결국별로 다른 관세지급  
제도로 인해 수출입업자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세지급 절차의 간소화, 관세  
감축률에 대한 지원 등 관세제도 조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국제정세 변화추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 동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FTA 영향의  
중추기업으로서 역할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8월 22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입지원, 세관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사회가 후원하는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FTA활용지원분야 ▲원산지 사후검  
증 대응분야 ▲일자리 창출분야 ▲통관으로 해소분야  
▲동반성장 분야 등 5대 분야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2편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활용지원분야에서는 FTA 활용을 위해 생산방  
식을 변경해 특허대상 신제품을 개발한 대구소재의  
섬유기업, FTA원산지관리를 시스템화하고 더 나아  
가 협력사의 원산지관리까지 지원해 중간기업의 불모  
지역을 제정한 다이아몬드공구 제조기업 등 사례 5편이  
발표되었으며,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분야에서는 유럽  
연합(EU)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 원산지검증을 완벽히  
분석하고 준비한 2편의 실제 검증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세관의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FTA 인력과 구인  
기업 간에 일지리를 연결해 청년실업을 해소한 2편의  
사례가 발표됐다.

아울러, 정부의 도움으로 고질적인 해외통관예로를  
극복한 2편의 사례와 협력업체 원산지관리체계 구축  
으로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의 특별사례도 소개됐다.

김관희 관세청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행  
사를 통해 FTA 활용 과정 중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전파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업체와 「원산지검증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10월 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자동차  
원산업체 및 부품수출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검증대응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지엠대우,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와 자동차  
차 부품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참석하여 원산지검증 대응  
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사례와 해외 통관예로사항, 미국·EU 등 거대경제  
권과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  
야 할 정보를 안내했으며, 특히 캐나다, 호주와의 FTA  
협정에서 자동차분야 주요 협상내용을 설명하여 참석  
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관세청은 “FTA 교역확대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원산  
지검증 역시 계속 증가(84건(11년) → 222건(12년) →  
291건(13년) → 209건(14년 8월)하고 있다”며, “검증  
결과, 원산지규정 위반비율은 약 8% 수준으로, 국내경  
제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더욱 철저한 원산지  
검증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정부와 기업 모두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  
로, 우리 경제에 신(新)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원산지검  
증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국내 전체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하며,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액의 절반이상을 FTA 체결상대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대표적인 FTA 수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1000cc~1500cc 미만 승용차의 한-미, 한-EU\* FTA 특혜세율

년도	한-EU FTA	한-미 FTA	비체결국
2012	5.3%	4%	8%
2013	4%	4%	8%
2014	2.6%	4%	8%
2015	1.3%	4%	8%
2016	0%	0%	8%

\* 한-EU는 발효일(2011년 7월 1일)에 따라 매년 7월 기준

###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공동개최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매일경제신문·mbn 등과 '2014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공동 주최하여 고졸 구직자들이 FTA 실무인력

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에 앞장섰다.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채용박람회로 올해로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박람회장 내에 '자유무역협정 채용관(이하 YES FTA관)'을 별도로 마련해 FTA 전문인력의 역할 및 전망 등을 소개 했는데, 이날 'YES FTA관'에는 에이테크솔루션, 세일전지 등 FTA 무역관련 실무인력 채용 의사가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해 고졸 구직자 500여명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취업 대박람회의 고졸 구직자들 중에는 전국 주요세관에서 실시하는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도 120명이 참여하여 기업 등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나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고졸구직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갖고 "기업들이 원산지관리사 등 FTA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을 선호해 취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로서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특성화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적극 양성하고 이들과 중소기업과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관세청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사업이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고용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 부산 경남지역 YES FTA 취업박람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10월 2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지방중소기업의 FTA 인력난을 해소하고 FTA 활용을 증대할 목적으로 부산본부세관이 주관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한국관세사회가 후원하는 '부산 경남 지역 YES FTA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성장기업(주), (주)금양, (주)흥아포밍, 화창물산(주) 등 부산 경남지역 우수기업 3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취업희망자는 구인기업과 사전 매칭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당일 박람회에 참여한 취업 희망자에게는 현장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 원산지관리사 응시 수험생 편의 대폭 확대

관세청은 지난 8월 시행한 제12회 시험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지역에 대한 다수 응시생들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관세청은 시험 응시 장소 확대로 지방 응시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응시 및 합격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치러진 11회 시험까지는 국제원산지 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사전교육의무제'에 따라 해당 교육 응시자에게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4월 30일자로 이를 폐지, 8월에 시행된 제12회 시험부터는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연간 2,000명(2013 기준)이 넘는 응시생들의 편의증진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자격시험인 제13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11월 15일 시행)은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일정과 장소는 국제원산지정보원홈페이지(<http://www.origin.or.kr>)를 참조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FTA·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거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험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23개 표준코드 마련

관세청은 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적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명서류 유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코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한-미 FTA 등 9개 협정과 관련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하 PSR)수는 약 4만 6,000개에 이른다. 그동안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협정별로 다르고 품목별도 다양해 물품 공급업체들이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쓸 때 따라 원산지증명서류를 주고받는데 혼란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EU협정에 따라 부가기기기준 45%가 적용되는 제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PSR표기를 VAR45%, RVC45%, R45%, B45%, MC45% ex-work45% 등으로 달리 나타내 원산지판리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표준코드 'R45'로

통일해 기존의 어려움을 줄여나갈것다는 계획이다. 관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동된 코드로

■ 표준코드 기재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의미	기재방법	표준코드
A change to this chapter from any other chapter (HS 2단위 세번 변경)	CC	C2
A change to this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HS 4단위 세번 변경)	CTH	C4
A change to this subheading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from any other heading (HS 6단위 세번 변경)	CTSH	C6
All th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 (원전 생산기준)	WOR	W0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XX used are wholly obtained (특정 류의 물품의 완전생산 기준)	WOR of Ch XX	WOEX
The value of all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 works price of the product (사용된 모든 재품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VARI(50)	E50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세번 변경 없이 예대 부가가치 기준) (a) 35% under the built up method or, (b) 진적법에 의거 최소 35% 이상이거나 (c) 45% under the built-down method, (d) 공제법에 의거 최소 45% 이상일 것)	RVC(35/45)	R35/R45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50% under the net cost method (세번 변경 없이 순원가법에 의거 최대 부가가치 기준이 최소 50% 이상 인 것)	NC(50)	N50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heading XXXX used does not exceed 5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특정 호에 사용된 모든 물품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VARI(50) of XXXX	E50EX

미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품의 협정관계 적용 지침 배포

관세청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품의 협정관계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놨다.

1.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 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1] 소급 발급되는 경우 (적용)



[사례 2] 먼저 발급되는 경우 (적용)



2.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 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계약 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장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중방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계 적용을 배제한다)

[사례 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적용)



[사례 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적용 배제)



3.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계 적용지침에 따라 원산지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나 예외적으로 원산지유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지침은 2014년 9월 22일부터 협정관계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 발간·배포

관세청은 8월 20일, 수출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을 설명한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최근 FTA 발효가 확대되어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도 계속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검증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협정 상 검증 준비서류는 원산지 입증 생산서류, 거래서류 등으로 마련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FTA 혜택을 포기하거나, 특히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해 혜택을 배제(추가경수)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FTA 활용에 도움을 위해 원산지 기준별,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안내 책지에는 주요 수출물품 및 원산지 기준별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거나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작성과정에서 산업별 협회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 책지는 전국 약 160개 산업별 협회와 수출기업에 배포되었으며, '관세청 FTA 포털(veslia.custom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세관의 '관세청 FTA 총합담담센터(이하 YES FTA 센터)'에서도 상담 후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설명회 등을 열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YES FTA 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 세관에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기업별 FTA 활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심사, 해외통관예로해소, 원산지 사후검증지원 등 FTA 준비부터 활용, 문제 해결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고 있다.

## 02 우리나라 FTA동향

###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난 10월 16일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행사는 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진뻐함으로써 FTA 활용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09개 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와 9건의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6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기업 15건, 학생 3건)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본선 진출작들에 대한 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기업부문은 대상 1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하고, 대학(원)생 부문은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을 각각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다 FTA를 통해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출에 성공한 사례, CEO의 관심과 전사적인 협업체계 구축, 협력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한 사례들, 시장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이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빛을 본 사례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생 부문에서는 쌀 가공업체의 한-중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아이디어,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한 지방 생형기기 수출 아이디어 등 아직 협상중이거나 발효되지 않은 FTA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사례들과 애원권 인구조증자료 확보가 예상되는 반려동물 기저귀를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상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나라가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과제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에 성공한 여러 사례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FTA무역종합지원센터도 앞으로 우수 활용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관세포럼, 추계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포럼(회장: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10월 19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원산지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4년도 추계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먼저 한남대학교 정재완교수는 '자유무역협 (FTA: Free Trade Agreement)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를, 관세청 백형민 사무관은 '원산지제도의 범용체계 등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부산본부세관의 한일권 관세행정관은 '공제요소에 대한 관세평가검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내놓았으며, 마지막으로 관세무역개발원 김영춘 박사는 '관세청 고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관세포럼'은 2000년 3월 이래 매분기 세미나를 열어왔으며, 현재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 137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FTA 비즈니스 포럼」,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의 11개 주요 도시에서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중이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FTA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역 내 수출기업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자유무역협정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포럼은 지역 경제단체 주 관으로 전국적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해 FTA 활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지역 내 기업과 지자체가 주 요 FTA에 대한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 스스로 FTA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TA 비즈니스 포럼」은 9월 대전에서 시작되었으며, 11월 경기도 수 원시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이 종료된다.



NEWSs, 광주·전남 FTA 비즈니스포럼

11월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인천(11.04, 화) : 인천상회
- 제주(11.07, 금) : 제주상의
- 충북·세종(11.11, 화) : 충북대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 경기(11.13, 목) :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문의

무역협회, 한-캐나다 FTA 활용 캐나다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0월 15일, FTA로 접근성이 높아진 캐나다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캐나다 FTA 활용 캐나다 대형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한-캐나다 FTA 캐나다 소매시장에 주목하라’ 보고서는 연간 약 514조원 규모의 캐나다 소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의 특징과 소비자 선호도, 영어 외 공식언어인 불어권의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 소매시장 진출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리벨링시 영어 및 불어 병기 의무 규정 등 캐나다 시장의 고유 특징 이해 ▲토론토·밴쿠버 중심으로 아시아계 인구에 대한 공략과 한류 활용 ▲밴쿠버·에드몬튼·토론토·캘거리·오타와·몬트리올 등 6대 대도시 우선 진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 관련제품 공략 ▲인증·인전규정·포장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꼽았다. 캐나다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이민자 유입으로 G8 국가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 소매판매도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자동차,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및 향수 등의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쇼퍼스 드럭 마트의 유통전문가인 제시카 김은 “캐나다는 대형 유통망 위주로 시장이 구성돼 있으며, 이런 시장 특성을 고려한 진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 시장을 미국과 동일하게 인식하는데, 캐나다 시장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FTA발효 이전에 캐나다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세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캐나다 FTA 체결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5년 협상 개시 이후 9년만이다.

한-캐나다 FTA협상 단계에서 민감품목인 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사한 쟁점으로 정체 상태에 있던 호주와의 FTA가 타결되면서 한-캐나다 FTA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 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FTA 양허대상 제외

정부는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WTO 협정에 근거 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또한 쌀 수입에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관세(SSG)의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다.

관세율 등은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하며, 국제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 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의 관세율로 수입허용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유통 금지를 추진중이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조를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 양허 대상 제외란?

관세양허란, "관세를 낮추겠다"는 약속

FTA협정마다 관세양허의 수준은 다르며, 동일 FTA 내에서도 품목별 양허 수준과 양허 유형도 다르다. FTA양허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즉시 철폐 품목, 시행 후 3년 이내 철폐하는 조기철폐품목, 시행 후 10년 내 또는 10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는 중·장기 철폐품목으로 구분되며, 품목축산물 중 일부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산업별 미치지 될 영향에 대해서는 자동차·일반기계 산업의 경우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15년 평균 1.5조원)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를 기대하고,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부터의 쇠고기·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연평균 약 1,102억원(총 농업 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를 예측했다. 수산업의 경우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연평균 약 0.45억원 생산 감소)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한-호주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한-캐나다 FTA(14.3월 타결)까지 종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제비업 부문에 대해 총 2.7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중-일 FTA 제5차 협상 베이징서 개최

지난 9월 1일부터 5일간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와 함께 경쟁, 지식재산권, SPS(위생/검역), TBT(기술장벽),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등 18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FTA가 동북아 지역의 체득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각국의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 및 경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협상 가속도를 높이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정부는 9월 16일, 4월에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주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하여 9월~10월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로 30일 후부터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 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로 GDP 총량이 약 15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GDP 총량의 20%. 동북아 GDP의 90%로 EU를 초월하는 수준이다.

2013년 3월,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 후 이번 5차 협상까지, 3국은 상품무역 감세 모델리티,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협상 중이며, 제6차 협상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개최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9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이 계획보다 하루 연장된 지난 17일 완료되었다. 양측은 상품, 투자, 원산지, 협력, 총직 등 각 분과별 협상을 통해 진여 쟁점을 해소하고, 특히 지난 제8차 공식협상(8월, 서울)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상품 분야에서 양국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협의 등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상품, 원산지, 협력 등에서 남은 대다수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점근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교역파트너로, 수출 44위, 수입 41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교역품목은 휘발유, 승용차, 경우, 건설중장비 및 합성수지 등이며, 뉴질랜드는 우리의 휘발유·경유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미 무관세(0%)를 적용중이다.

## 한-베트남, 연내 FTA 체결 의지 밝혀

지난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응빈 푸 쩡 베트남 사기업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한-베트남 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밝혔다.

쩡 사기업은 베트남내 권력 서열 1위로, 지난해 9월 박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이은 담보으로써 박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베트남 FTA 협상의 연내타결 추진, 베트남 내 각종 대형 에너지 인프라사업 참여, 한국계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등 경험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체결'을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교섭대표단 제7차 한-베트남 FTA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협력 등 각분야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기준 우리의 제9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 대상국(아세안 국가 중 2위 교역국,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의 FTA 체결은 기존 한-ASEAN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협상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두나라의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국 FTA 제13차 협상 개최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2014. 9. 22(월)~9. 26(금)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직 등 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추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려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아직 양측 입장차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 (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 '통신', '지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를 전체 22개 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장이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되었으며, 아울러, '통관 및 무역일괄화', 'TBT(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진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하였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對중 수출 수출 예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03 해외 FTA동향

### 인도, ASEAN과 서비스부문 FTA승인

인도는 지난 9월 8일 ASEAN 9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서비스 전문직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과 투자 축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투자부문 FTA협정에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총 10개국 중 필리핀만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인데, 필리핀 역시 내부 승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본 협정은 서비스 부문의 전문 인력과 해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으며, 조항의 투명성, 국별 규제, 협정 승인, 시장 접근, 내국인 대우, 개도국 참여 확대, 서비스분야 합동 위원회, 이행평가, 분쟁해결, 제3국에 대한 FTA해택 제한 등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와 ASEAN 간 상품분야에 대한 FTA는 이미 지난 2009년 체결된 바 있으나, 아세안 지역 내 관세가 기본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혜택은 미미한 편이었다.

이번 협정의 승인에 따라 역대 18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시장 규모와 서비스 부문과 연계된 4000개 이상의 제품개열에 대해 효력이 미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인도 ASEAN간 무역규모는 800억 달러 수준이며, 인도 인원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2015년까지 ASEAN 국가와의 무역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 승인

유럽의회는 지난 9월 16일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을 승인하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 의회도 동일 협정 비준을 승인했다.

협정은 올해 11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보복조치에 따라 EU,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협상을 통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류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국내 반대세력과 러시아와의 갈등 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EU와 FTA 협상을 체결했으며,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조지아, 몰도바 3개국이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친유리노선으로 기쁨에 따라 경제보복을 공언해 왔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7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장육 제품 및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하여 위생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조치한 바 있다.

### ■멕시코 국가별 FTA체결 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NAFTA	미국, 캐나다
G3	콜롬비아(베네수엘라, '06.11 탈퇴)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멕시코-칠레 FTA	칠레
멕시코-EU FTA	EU 28개국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TN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AELC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멕시코-일본 FTA	일본
멕시코-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멕시코-페루 FTA	페루
멕시코-중미 5개국 FTA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파나마 FTA	파나마

**멕시코, FTA 미체결국산 신발 수입관세 인상**  
 멕시코는 덤핑제품으로부터 자국의 신발산업 보호 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산 신발에 대해 25~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신발제품이 수입 가능한 세관을 9개로 별도 지정함에 따라 해당 세관 외 다른 세관으로부터는 신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멕시코는 주변국과 FTA를 확장하면서 제조업 강자로 부상할 기회를 개척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과 FTA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콜롬비아, 페루 및 칠레와 태평양동맹을 체결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더 키웠다.



### ASEAN-EU FTA 가능성 제기

지난 7월 23일 브뤼셀에서 ASEAN과 EU 38개국 외교 부장관들은 각국들과의 FTA가 원활히 진행중임을 발표하고 EU와 ASEAN 전체의 FTA가 준비되었다며, FTA 체결 가능성을 밝혔다.

EU 통상위원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타결하였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이런 각국들과의 FTA는 동남아시아 전체와의 FTA를 위한 준비라고 발표했다.

또한 EU는 앞으로 아세안국가의 국제범죄, 마약, 테러 등 범죄 근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음을 밝혔다.

### EU집행위, 2017년까지 유럽인증수출자 확인시스템 구축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수출업체 정보를 통합관리 하는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gistered Exporter's System)인 '렉스(REX)'를 구축해 2017년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EU와 거래하는 국내 수입업체는 상대 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 할 수 없어 FTA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 '렉스(REX)'가 개통되면 앞으로 유럽에서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상대 업체가 FTA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일본-몽골 FTA 타결

지난 7월 22일 일본과 몽골간의 FTA가 타결됐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본 수출품 96%와 모든 몽골 수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면서, 현재 일본과 몽골간의 무역은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몽골의 광물 등 자원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 의존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이다. 양국간 수출 규모는 2013년 기준, 일본의 대몽골 수출은 288억 달러, 몽골의 대일본 수출은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부는 한재 몽골이 북한과 외교적 교류를 지속하는 몇 개 되지 않는 국가임을 고려해, 이번 FTA로 북한의 일본 포로들에 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콩-칠레 FTA 발효

지난 10월 9일, 홍콩과 칠레간의 FTA가 발효됐다. 이번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측의 투자자와 거래자는 각각의 시장에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칠레는 홍콩산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 88%를 즉시 철폐하고 추가 10%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홍콩과 칠레 간의 투자 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측은 협정의 발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별도의 포괄적인 계약을 협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콩-ASEAN FTA 추진 현황

홍콩은 올해 발효된 홍콩과 칠레간의 FTA에 앞서 2003년 중국, 2010년에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2011년 6월에는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012년에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무역·서비스산업·투자의 활발한 교류를 꾸준히 도모해왔다.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ASEAN과의 FTA 협의에 동의했다. 홍콩-ASEAN FTA는 홍콩과 아세안 간 더욱 긴밀한 경제 융합은 물론 상호 보안성 및 협동효과를 가져다 주어 아세안과 홍콩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중국-호주 FTA 동향

올해 11월 브리즈번에서 개최 예정인 G20 회의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호주 간 FTA가 체결될 전망이다. 호주가 최근 한국, 일본과의 FTA를 연이어 체결함에 따라 중국은 호주와의 조속한 FTA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U, 베트남과 FTA 촉진

EU 공통외교 인보정책 담당대표는 지난 8월 12일 베트남과 연내 FTA 서명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EU는 베트남 최대의 수출국으로 2012년 기준 약 28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바 있다. EU-베트남 FTA는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던 FTA01기도 하다.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FTA 체결 노력

스리랑카 산업통상부 장관은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의 FTA체결을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산업통상부 장관 "두 국가간의 무역거래는 최근 67%까지 증가했으며, 양국이 서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얀마-이스라엘 FTA 체결

지난 10월 6일 미얀마 양군에서 미얀마와 이스라엘간 FTA가 체결되었다.

이번 FTA로 인해 이스라엘의 쌀미얀마 투자촉진, 양국간 교역확대 및 미얀마 산업부문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의 기FTA 체결국으로는 호주-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중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다.